

2025년 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(2차)

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철거 비용 및 지붕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25년 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(2차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5. 5. 29.

파 주 시 장

1 사업 개요

가. 지원대상 :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

나. 지원범위

- 주택·부속건물 및 비주택(축사, 창고, 노인 및 어린이시설)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

※ 지붕개량은 예산소진으로 신청불가

다. 사업기간 : 2025. 2. ~ 2025. 12.

라. 사업량 : (슬레이트 철거) 124동[주택·부속건물 84동, 비주택(축사, 창고, 노인 및 어린이시설) 40동]

마. 지원금액

- (철거·처리) 주택 동당 최대 700만원, 비주택(축사, 창고, 노인 및 어린이시설) 동당 최대 54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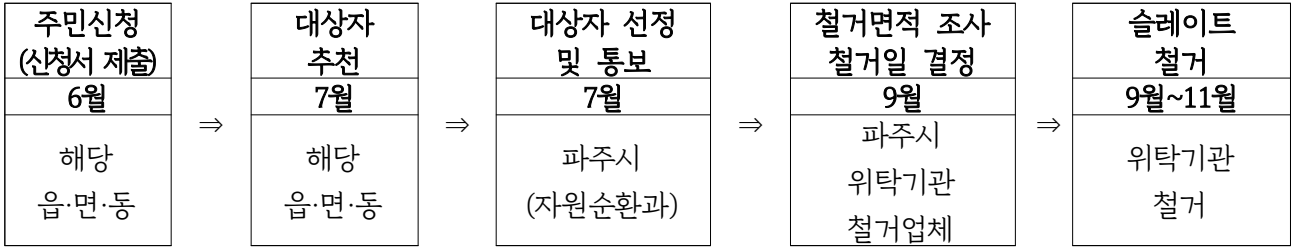
※ 우선지원가구: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(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 포함 가구)

2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

가. 신청기간 : 2025. 6. 2.(월) ~ 2025. 6. 30.(월)

나. 신청방법 :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
다. 진행절차



라. 선정방법 : 2025. 6. 30.까지 신청자 중 우선순위* 기준에 따라 선정

- * 우선순위 :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 등 기타취약계층
④ 빈집정비사업,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등 연계사업 대상자

신청서 등 제출서류

- ① 지원 신청서 및 건축물 위치도, 사진현황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③ 건축물 소유사실 증빙서류(건축물대장 등)
- ④ 취약계층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)

※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: 사실확인서 첨부

※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철거 동의서 등 첨부

3 기타사항

가. 2011~2024년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

나. 미리 철거 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

다.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건축물 소유자가 초과금액 만큼 자부담하여야 함

라. **지붕개량은 예산소진으로 신청불가**

4 문의처

- 파주시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 (☎940-4472)
-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